



# 서울고등법원

## 제 40 민사부

### 결 정

사 건 2022카기20007 위헌심판제청

신 청 인

1. [Redacted]

[Redacted]

2. [Redacted]

[Redacted]

[Redacted]

###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신 청 취 지

신청인들에 대한 이 법원 2022라21374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에 관하여 적용되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9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다.

### 이 유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 신청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소명된다.

### 가. 신청인들의 관련사건 경위

1) 신청인들은 2019. 7. 3.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합 108198호로 차별구제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0. 7. 8. 신청인들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소송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한다고 판결하였다.

2) 이에 신청인들은 서울고등법원 2020나2024708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1. 8. 19. 신청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한다고 판결하였고, 위 판결은 2021. 9. 3.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제1심과 제2심을 통틀어 '관련사건'이라 한다).

### 나. 당해사건의 경위

1) 서울교통공사는 관련사건 제1, 2심을 위해 법무법인 케이씨엘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는데, 관련사건 판결 확정 후인 2021. 9. 27. 신청인들을 상대로 관련사건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2) 제1심 사법보좌관은 2021. 12. 14. 서울교통공사가 법무법인 케이씨엘에게 실제로 지급한 변호사보수의 범위 내에서, 관련사건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보수규칙'이라 한다) 제3조 별표에 따라 계산한 변호사보수(제1심 5,000,000원, 제2심 5,000,000원)를 포함하여 관련사건의 소송비용액을 산정하여 '관련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신청인들이 서울교통공사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각 5,005,640원 임을 확정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3) 이에 신청인들이 2021. 12. 17.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며 이의신청을 하자, 제1심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본드 방지용 바코드입니다.



www.scourt.go.kr  
문서출력용바코드

법원은 2021. 12. 21. 위 결정을 인가하였고, 현재 항고심이 계속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21라21374호, 이하 '당해사건'이라 한다).

#### 다. 신청인들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인들은 당해사건이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

### 2. 위헌법률심판제청의 판단대상

판단대상은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9조 제1항으로서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 ☑ 민사소송법

#####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 소송비용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 3. 재판의 전제성

서울교통공사는 이 사건 조항을 근거로 신청인을 상대로 관련사건의 변호사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

### 4. 이 사건 조항의 위헌 여부

#### 가. 신청인들의 주장

이 사건 조항은 공익소송 등 당사자 사이에 힘의 우열이 명백한 사건에 대하여 예외를 두지 않음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해 고려를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조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문 방지용 비코드가 있습니다.



www.scourt.go.kr  
음성출력용비코드

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98조가 소송당사자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보장하고, 남소와 남상소를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99조 내지 제101조는 소송비용의 패소자 부담원칙에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대법원규칙 등에서 소송비용의 범위와 액수를 한정하며, 소송비용 확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제도나 소송구조제도를 두어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으므로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권리남용의 성격 및 소송비용부담의 예외규정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면 권리남용의 경우에 별도의 예외를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98조가 재판청구권 또는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8. 14.자 2014카기406 결정, 헌법재판소 2013. 5. 30. 선고 2012헌바335 결정).

2)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이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여 패소한 당사자의 부담으로 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부당한 제소에 대하여 응소하려는 당사자를 위하여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보장하고, 남소와 남상소를 방지하여 사법제도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로써 정당한 권리실행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응소한 사람은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게 되고 패소할 경우 상환할 변호사비용의 부담으로 인하여 부당한 제소 및 방어와 상소를 자제하게 될 것이므로 방법의 적정성도 인정된다. 그리고 위 법률조항 및 보수규칙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되는 구체적인 소송비용의 상환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있고,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하여 소송제도를 이용하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 변조 방지용 터포드입니다.



www.scourt.go.kr  
음성출력용바코드

려는 사람을 위한 실효적인 권리구제수단 미련 및 시법제도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또한 위 법률조항은 정당한 권리자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사법제도의 운영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두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3. 10. 14.자 2013카기342 결정, 헌법재판소 2011. 5. 26. 선고 2010헌바204 결정, 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3헌바370 결정 등 참조).

3) 이에 대해 신청인들은 이 사건 조항에 대해 공익소송 등 당사자 사이에 힘의 우열이 명백한 사건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하지 않아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인권에 관한 소송, 소비자보호 소송, 고용관계 소송, 환경보호소송 등 이른바 공익소송과 같이 소송의 승패와 무관하게 문제제기 자체로 잘못된 악습이나 제도의 개선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소송 유형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변호사보수를 패소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는 것은 이 사건 조항의 입법 취지와 맞지 아니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의 소송 자체를 봉쇄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위와 같은 공익소송 유형에 대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을 제한하는, 이른바 변호사비용의 편면적(片面的) 패소자부담주의를 도입할 것인지는 입법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이고, 공익소송에 해당하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경우 소송 상대방의 실효적인 권리구제의 필요 또는 남소, 남상소의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즉, 위와 같은 특정한 유형의 소송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변호사보수의 소송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변조 발견용 바코드입니다.



www.scourt.go.kr  
금성출력용바코드

비용 산입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패소한 당사자가 변호사보수를 부담하지 않도록 할 경우 이 사건 조항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같은 정도로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항과 이에 근거한 보수규칙은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과 그 경과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를 감액하거나 증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체적 소송비용의 상환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으로 위와 같은 유형의 소송 당사자의 재판받을 권리가 어느 정도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실효적인 권리 구제와 사법제도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이라는 공익에 비하여 무겁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9. 11. 28. 선고 2018헌바235·391·460·471, 2019헌바56·95·145(병합) 결정]. 또한,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일반 민사소송과 위와 같은 공익 소송 소송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조항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도 할 수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6. 8.



위변조 방지용 바코드입니다.



www.scourt.go.kr

음성출력용바코드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정본입니다.

2022. 6. 8.

서울고등법원

법원주사보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